〈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044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02-1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3-13

육쌀국수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거북이꿈]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거북이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7길 54, 지층, 2층 3층(서초동, 가우사)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6494-1234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6494-1219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6494-1234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 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육쌀국수 외 11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7길 54, 지층, 2층 3층(서초동, 가				
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거북이꿈	2020.05.07	2020.05.07	한 국 인	02-6494-1234	02-6494-1219	
	법인등록번호	110111-7476686	사업자등록번호	746-87	-0192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	그그조 Ol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	남대로47길 54, 지층, 2	층 3층(서초동, 가우사)
대표이사	한국인	구구족 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1개	한국인	02-6494-1234	02-6494-121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구구족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	남대로47길 54, 지층, 2	<u>층 3층(서초동, 가우사)</u>
사내이사	김용수	11기 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 12	한국인	02-6494-1234	02-6494-121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구구족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	<u>남대로47길 54, 지층, 2</u>	<u>층 3층(서초동, 가우사)</u>
사내이사	장준	11기 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17	한국인	02-6494-1234	02-6494-121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박용운	구구족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	남대로47길 54, 지층, 2	층 3층(서초동, 가우사)
사내이사		11기 시 11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 12	한국인	02-6494-1234	02-6494-121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플라잉볼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u>- 강남대로47길 54, 3</u>	층(서초동, 가우사)
계열회사	㈜플라잉테이블	4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게르되시		4711	한국인	02-6494-1234	02-6494-1219
	법인등록번	호 11	0111-5414357	사업자등록번호	135-86-4419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¹ 강남대로47길 54, 3	층(서초동, 가우사)
계열회사	㈜한국인	닭광정 외1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게 크지시			한국인	02-6494-1234	02-6494-1219
	법인등록번	호 11	0111-7214391	사업자등록번호	746-87-01921

- ▶ (주)한국인의 닭광정(20190589), 이천가든(20200287)은 2024년에 (주)플라잉테이블로 양도되었으며, (주)한국인은 2024. 2. 26. 부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해당 법인에 당사의 임원 또는 특수관계인이 없으므로 계열회사가 아닙니다.
- ▶ 김용수 님은 2023년에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당사의 임원이 아닙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육쌀국수]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육쌀국수	
상 호	육쌀국수 OO점	
서비스표	자 육쌀국수 고기(肉)주는 쌀국수집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378,033	1,011,148	366,885	3,846,460	286,823	344,923
2022년	2,637,684	2,015,515	622,168	8,708,226	362,504	255,283
2023년	2,608,980	2,438,295	170,684	7,201,209	26,146	48,435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직전연도 말 손익계산서상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영업표지 '스내킹'은 가맹사업 매출액 비중이 미미하여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교단서구	이금	2 4H	기간	직위	담당 업무			
			2014.05.14. ~ 현재	㈜플라잉테이블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한국인	대표이사	2019.8.26. ~ 2024.2.14.	㈜한국인 대표이사	2024년 사임			
71 111 11 01			2020.05.07. ~ 현재	㈜거북이꿈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가맹사업	김용수	사내이사	2020.05.07. ~ 2023.05.07.	㈜거북이꿈 사내이사	2023년 임기만료			
관련임원	장준	사내이사	2020.05.07. ~ 현재	㈜거북이꿈 사내이사	가맹사업 담당			
	で正		2019.08.26. ~ 2024.2.14.	㈜한국인 사내이사	2024년 사임			
	박용운	사내이사	2021.01.26. ~ 현재	㈜거북이꿈 사내이사	가맹사업 담당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	직원수 (명)	
시점	상근	비상근	역면구(경)
2023년 12월 31일	3	-	3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가맹사업경영					2020.05 ~ 현재	구구족(등록번호: 20200778)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중
			가맹사업 준비중	고기애찬(등록번호:20210445)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준비 중				
	가맹본부 (㈜거북이꿈/ 한국인		가맹사업 준비중	아구구(등록번호:20210401)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준비 중				
가맹본부			가맹사업 준비중	고봉치킨(등록번호:20210446)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준비 중				
			가맹사업 준비중	돈주는스시(등록번호:20210402)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준비 중				
			2023.04 ~ 현재	스내킹(등록번호:20210447)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중	선녀피자 나무꾼치킨(등록번호:20210448)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준비 중				



			가맹사업 준비중	나의 18번 떡볶이(등록번호:20210449)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준비 중
			가맹사업 준비중	참 잘하는 짬뽕집(등록번호:20210215)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준비 중
			가맹사업 준비중	저스트 버거 앤 샌드위치(등록번호:20210444)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준비 중
			가맹사업 준비중	삼시락(등록번호:20210451)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준비 중
			가맹사업 준비중	육쌀국수(등록번호:20210443)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준비 중
	㈜한국인/	기메니어 거어	2019.6.~2024.2	닭광정(등록번호:20190589)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 2024년 2월에 다른 가맹본부가 인수하였음
	한국인	가맹사업 경영	2020.2.~2024.2.	이천가든(등록번호:20200287)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 2024년 2월에 다른 가맹본부가 인수하였음
		불 가맹사업 경영	2014.09 ~ 현재	플라잉볼 (등록번호:20141120)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계열회사			2019.06 ~ 현재	이천가든(등록번호:20190590)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플라잉테이블 /한국인		2019.10 ~ 현재	이태리함박육쌀국수(등록번호:20191035)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19.06 ~ 현재	닭광정(등록번호:20190589)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20.02 ~ 현재	이천가든(등록번호:20200287)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 (}주)한국인의 닭광정(20190589), 이천가든(20200287)은 2024년에 (주)플라잉테이블로 양도되었으며, (주)한국인은 2024. 2. 26. 부로 사명이 변경된 한편 해당 법인에 당사의 임원 또는 특수관계인이 없으므로 계열회사가 아닙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11(=-1)		(8 7 2 8 1)	'사용기간)
상 표	육쌀국수	-	-	-	-

당사의 상표권은 관계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육쌀국수] 가맹사업 현황

1. [육쌀국수]를 시작한 날: 가맹사업 준비 중(가맹계약 체결 사실 없음)

2. [육쌀국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거북이꿈	육쌀국수	한 국 인	가맹사업 준비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7길 54, 지층, 2층 3층(서초동, 가우사)

3. [육쌀국수] 업종

영업표지	업종					
육쌀국수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외식업	기타 외국식(쌀국수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육쌀국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TIM		2021.12.31.		2022.12.3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_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당사는 가맹사업 준비중입니다.



5. 바로 전 3년간 [육쌀국수]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	_	-	_	_	-
2022년	-	-	-	-	-	-
2023년	-	-	-	-	-	-

[▶] 당사는 가맹사업 준비중입니다.

6. [육쌀국수]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본	당사는 본 영업표지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1 2	8포/직금	0 급 표 시	등록번호	80	2021.12.31	2022.12.31	2023.12.31	
		육쌀국수	20210443	외식업	0/0	0/0	0/0	
		삼시락	20210451	외식업	0/0	0/0	0/0	
		저스트 버거 앤 샌드위치	20210444	외식업	0/0	0/0	0/0	
		참 잘하는 짬뽕집	20210450	외식업	0/0	0/0	0/0	
	㈜거북이꿈/	나의 18번 떡볶이	20210449	외식업	0/0	0/0	0/0	
가맹본부	한국인	선녀피자 나무꾼치킨	20210448	외식업	0/0	0/0	0/0	
		스내킹	20210447	외식업	0/0	0/1	1/0	
		고기애찬	20210445	외식업	0/0	0/0	0/0	
		돈주는스시	20210402	외식업	0/0	0/0	0/0	
		고봉치킨	20210446	외식업	0/0	0/0	0/0	
		아구구	20210401	외식업	0/0	0/0	0/0	
		구구족	20200778	외식업	95/0	109/0	113/0	
		플라잉볼	20141120	외식업	6/0	3/0	1/0	
	㈜플라잉테이블	이천가든	20190590	외식업	3/5	3/6	4/5	
계열회사	<i>/</i> 한국인	이태리함박 육쌀국수	20191035	외식업	1/0	1/0	1/0	
	㈜한국인/	닭광정	20190589	외식업	12/0	5/0	3/0	
	한국인	이천가든	20200287	외식업	2/0	2/0	1/0	

^{▶ (}주)한국인의 닭광정(20190589), 이천가든(20200287)은 2024년에 (주)플라잉테이블로 양도되었으며, (주)한국인은 2024. 2. 26. 부로 사명이 변경된 한편 해당 법인에 당사의 임원 또는 특수관계인이 없으므로 계열회사가 아닙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육쌀국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가맹사업 준비 중입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기	ㅏ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말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H출액(하한)	비고
시작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니끄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8. [육쌀국수]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육쌀국수]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0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육쌀국수]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육쌀국수]외 11개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비고		
TE	T판 구진	기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마
합계	-	비공개	192,954	192,954	-	
	소계	-	147,708	147,708	-	
광고	비공개	-	-	-	-	비공개
	비공개	-	-	-	-	
판촉	-	-	45,246	45,246	-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사업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해 가맹금을 받고 있습니다.

12. 가맹사업보증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가맹사업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SGI서울보증
보험계약자	㈜거북이꿈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육쌀국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입비	5,500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영업개시이전 까지 계약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소요된 실제비용을 제외한 전액 반환
교육비	5,500	13일 이테	교육참가전	교육 시작 후	교육진행시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게야이해ㅂ조그	IE 0001	가맹계약 체결 후 3일	가맹금 미지급, 물류비	가맹계약 해지시 정산
계약이행보증금	[5,000]	이내	미결제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6,000
 가맹비	5,500
교육비	5,500
(현금)계약이행 보증금	5,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41,800	4,180			푸드코트기준(10평)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미지정)	20,900	2,09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33m² 기준
간판	협력업체 (미지정)	1,650	165	물품 공급 1일 이전	공사 전 계약취소	특수상권 간판과 시안물 포함
장비	협력업체 (미지정)	15,950	1,595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협력업체 주문 전	
집기(기물)	협력업체 (미지정)	1,650	165	별도계약	협력업체 주문 전	자체제작 플레이트와 기물 포함
소모품(홍보물)	협력업체 (미지정)	1,650	165	별도계약	협력업체 주문 전	유니폼 외 제작물 포함
오픈마케팅	가맹본부	2,000	200	별도계약	진행 전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비용**: 철거, 냉난방, 후드 입상, 갈바외관, 전기증설, 전기온수기, 에어커튼, 어닝, 모니터 등 견적 외 품목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0만원(vat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본사점포개발팀 (02-6494-1234)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통행인의 수, 교통 량, 시장특성, 통행인의 구매습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별 특성 등 을의 점포선정에 대해 조 언을 할 수 있습니다.

※ 점포선정에 따른 최종 결정은 가맹희망자가 하며 선정 후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보건증 발급 가능자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ㆍ 공급업체

[육쌀국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로열티)	가맹본부	330	익월10일	반환안됨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해당없음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시행업체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해당없음				교육 필요시 본사에서 훈련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견적내용에 따라 다름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견적에따라	교체.보수 후 2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물류대금	가맹본부	견적에따라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변제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상표사용료, 인테리어,시설 비,물류대금 등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등을 점검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물품 취급 여부, 서비스 상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기간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여야할 금액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혐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기간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육쌀국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와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 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 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육쌀국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 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가맹본부가 정하는 품목과 공급업체 등은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 1개월 전에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시행하기로 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단위: 원, 부가세 포함)

ΛШ	프 모 (다이네)	공급단가		그브
군인	순번 품목(단위:1ea)	상한	하한	丁 亚
1		해당사항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육쌀국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



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육쌀국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육쌀국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 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ㆍ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4]상품품목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별첨4]상품품목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다시 고그프모	공급 및 판매할 수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공급품목	없음	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혐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한 접충 검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쌀국수를 메인으로 하는 업종	육쌀국수	이태리함박육쌀국수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5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백화점, 쇼핑몰,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복합다중시설내와 수도 권 및 광역시의 경우 6차선(그 이외지역은 4차선)이상의 도로의 건너편은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동일업종이 아닌 영업표시를 가진 가맹사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해당 영업지역에 추가 개설할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육쌀국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육쌀국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	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육쌀국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소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제적인 절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②, 아니오→⑦	D-100 1 D-3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⑤, 아니오→A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①+15일 이내			
ᆸ닉까: 예→B, 아니오→A	(I)+13로 어테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	D-100 % D-3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D 00E YE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	_			
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				
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물품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8조 제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 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제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8조 제2항			
○ 가맹사업의 브랜드 보호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기법, 판매기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8조 제2항			
○ [육쌀국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 우	제8조 제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 는 제외합니다.)	제8조 제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 약 해 지 사 유	관련 조문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 제1항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여 계약체 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39조 제1항		
○ 기타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39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9조 제3항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제39조 제3항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9조 제3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9조 제3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 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제3항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제3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9조 제3항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9조 제3항
o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9조 제3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 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 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 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02-6494-1234)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 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 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가능	가맹점사업자 가 지정한 범 위 내의 권리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 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육쌀국수]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쌀국수를 메인으로 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02-6494-1234)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육쌀국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 없음 	1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문의: 당사 (02-6494-123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특별한 제한 없음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육쌀국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비율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가맹지역본부부담	분담 절차	비고
	브랜드 및 상품광고	별도협의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주들의	-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 가맹점모집광고			행사동의→ 행사 시작 (단, 광고 성격상 분담비율을 조정하여야 함이 상당할 경우 조정가능함)	-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 전체 가맹점사업자 의 50%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
	가맹점 모집광고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행사 계획 공고→디자인 및 기념품 등 시안 제시→ 행사 시작	- 월별판촉행사 - 전체 가맹점사업자 의 70%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
기타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가 승인한 시안 및 운영규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인 . 허가 및 초기 투자금의 납입과 위약벌)

⑤ "을"은 제11조 내지 제18조의 이행을 위해 "갑"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별첨1의 대금 지급방법(예치 포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이때 "을"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개점 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위약벌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

⑥ 위약벌 이외에 "갑" 또는 "을"에게 추가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 (위약금 등)

- ①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제22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일금 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위법행위 중단 시까지1일당 금 이십만원(₩200,000)씩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③ "을"이 계약 기간 중 **제25조(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제27조(자점매입)**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일금 이백만원(\\2**,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을"이 제25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이 지정한 판매방식이나 유통채널을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 (손해배상 청구)

①"갑"은 제41조의 위약벌 규정과는 별도로 "을"의 본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 또는 "갑"의 임원이 위법행위 및 가맹사업상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갑"이 별도 가맹본부 회사를 통하여 동일한 가맹사업을 진행할 경우 각 가맹본부 회사는 [참 잘하는 짬뽕집] 영업지역을 서로 구분되어 각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사업 희망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갑이 배상한다.
- ④ "갑"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을이 판매 매출액의 허위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로열티를 불완전이행한 경우, 허위 또는 누락 매출액에 해당되는 로열티 금액의 10배를 갑에게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위약벌로 기존 미이행된 로열티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제43조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 반환 조건)

- ① 가맹점 오픈 후 최초 계약기간 내에 해지된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 받은 가맹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반환 여부를 결정한다.
 - 1. 가맹비는 "을"이 참 잘하는 짬뽕집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가맹사업 개시 후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2. 로열티는 "을"이 "갑"의 가맹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갑"이 제공하는 가맹점운영권을 지속하기 위하여 매월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후불제 정기지급금으로서 반환되지 않는다.
- ② 전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반환되는 금전에 대하여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 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반환 범위가 변경 될 수 있다.
- ③ "갑"은 제39조의 위약벌 규정과는 별도로 "을"의 본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동안 "갑"이 지원한 금액과 잔여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갑"의 수익("갑"의 기대수익, 로열티 또는 기타 정기납입금의 미지급분 등), 그리고 해당 지역에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한 추가 비용 등이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45일 내외	14p~15p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10개 리스트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43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1-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예상매출액)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9~28	-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27~26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5~5	-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4~2(3일)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1일)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 어 등의 객관적 으로 경이 보기 인정이 보기 인정이 그렇게 이 인하이 그렇게 되었다. 이 인하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 ○인테리어 공 시비용(장비) 제외한 실내 건축요되는 일체의 가맹사업의 가맹사업자가 동일성과 무관하게 공사를 따라 소요 제외) 오 제외)	O 점포의학장 또는 수반하지 또 20%이 전 조 또는 가선 : 20%O 점 또 또 수반하고 전을 점포 또 수반하는 점조 한경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간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통하여점포환경개선을 한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날부터 90일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걸쳐가맹본부부담액을 보할지급 (1차:청구일로부터 90일이내,총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총부담액의 40%) 	○점로부터에 사용해도 경부 한 이 비 다 이 의 양 보는 이 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새롭게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 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 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 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협의하여 부담	문의 : 당사 (02-6494-1234)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금에	문의 : 당사 (02-6494-1234)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육쌀국수]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육쌀국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5일 ~ 20일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2일	무상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	1일	무상	사유 발생 시	
재교육	1일	실비	재교육자 부담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 및 종업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시까지 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프랜차이즈팀(02-6494-123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1: 최근 3년치 재무상황



별첨자료2: 설비 및 집기



별첨자료3: 원부재료리스트



별첨자료4: 메뉴 및 가격

No.	상품·용역	가격(단위: 원)	비고
1	쌀국수	5,900	
2	쌀국수 + 불고기	7,500	
3	쌀국수 + 삼겹살	8,500	
4	쌀국수 + 갈비	9,500	
5	비빔쌀국수	6,200	
6	비빔쌀국수 + 불고기	7,800	
7	비빔쌀국수 + 삼겹살	8,800	
8	비빔쌀국수 + 갈비	9,800	
9	파인애플볶음밥	6,500	
10	소고기볶음밥	7,500	
11	사이드 - 공기밥	1,000	
12	사이드 - 고기추가	3,000	
13	콜라 355ml	1,500	
14	사이다 355ml	1,500	